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및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기금의 용도는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고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마.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팀장으로 정함(안 제15조).
- 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월 2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437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15일

발의의원 : 성길용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및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기금의 용도는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고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마.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팀장으로 정함(안 제15조).
- 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청사”란 오산시의 시청, 의회,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에서 건립하는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 등 오산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이하 “공용청사 등”이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오산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3.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임차보증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공용청사 등의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 공용청사 등 건립 부지·건물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리모델링비
 3. 증축 또는 재건축에 따른 임시 사용을 위한 임대경비
 4. 행정기구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용청사 임대보증금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 ② 기금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시설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의 운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